

II 질병, 육아, 가족돌봄 휴·복직 처리 지침

1. 질병휴직

가.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호,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

나. 휴직사유

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
다. 휴직의 요건

- 1) 휴직 대상 : 남·여 교육공무원
- 2)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: 합병성·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·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됨

라. 휴직의 기간·연장·재휴직 등

- 1) 휴직기간 :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무원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- 2) 휴직의 신청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
 - 가)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.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
 - 나) 휴직기간(총2년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, 복직 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. 다만,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
 - 다) 휴직기간(총2년)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
 - ▶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
 - ▶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